#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회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69

발의연월일: 2022. 8. 30.

발 의 자:김회재·강민정·강선우

김승원 · 김의겸 · 김정호

민홍철 · 양경숙 · 윤관석

이병훈 • 전재수 • 주철현

한준호 • 허 영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 인을 할 수 있는 '특별한정승인'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리고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특별한 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의 인식여부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인식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하였고, 이에 따라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왔음.

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미성년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정대 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무지 등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를 통해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,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이스스로 법률행위를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019조제4항 신설 등).

###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 만료 당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(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였을 때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
- 1.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
- 2.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

제1030조제1항 중 "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"을 "제1019조제1항, 제3항 또는 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019조제3항"을 "제1019조제3항"을 "제1019조제3항"을 "제1019조제3항"을 "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"으로 한다.

제1034조제2항 본문 중 "제1019조제3항"을 "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"으로 한다.

제1038조제2항 후단 중 "제1019조제3항"을 "제1019조제3항 또는 제4

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)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 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인 상속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 정의 기간이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第1019條(承認, 抛棄의 其	阴間) ①	第1019條(承認, 抛棄의 期間) ①
~ ③ (생 략)		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
		제1항의 기간 만료 당시 상속
		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
		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
		<u>승인(제1026</u> 조제1호 및 제2호
		의 규정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
		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
		하였을 때라도 성년이 된 날로
		부터 3년 내에 다음 각 호의
		구분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
		있다.
		1.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
		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
		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
		<u>부터 1년 이내</u>
		2.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
		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
		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
		<u>터 1년 이내</u>
第1030條(限定承認의 方式	(1) ① 相	第1030條(限定承認의 方式) ① -
續人이 限定承認을 함。	에는 <u>제1</u>	

019조	제1항 5	든는	<u>제3항</u> 의	期間
內에	相續財產	産의	目錄을	添附
하여	法院에	限分	三承認의	申告
를 하	여야 한	다.		

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 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## 第1034條(配當辨濟) ① (생 략)

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 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 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 다. 다만, 한정승인을 하기 전 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 한다.

第1038條(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号

- <u>제1019</u> 조제1항,	제3항	또는
제4항		
② 제1019조제3항	또는 저	<u> 14항</u> -
	-	
第1034條(配當辨濟)	(1) (ত্	변행과
같음)		
② 제1019조제3항	또는 저	<u> 14항</u> -
第1038條(부당변제	등으로	인한

책임) ① (생 략)
② 제1항 전단의 境遇에 辨濟를 받지 못한 相續債權者나 遺贈 받은 者는 그 事情을 알고辨濟를 받은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.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(생 략)

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제1019</u> 조제3항 또
는 제4항
<u>는 제4항</u>
<u>는 제4항</u>
<u>는 제4항</u>
는 제4항
는 제4항